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1989.	8.	5.	조례	제 975호
개정	1989.	12.	13.	조례	제 999호
개정	1991.	4.	11.	조례	제1112호
개정	1991.	7.	24.	조례	제1115호
개정	1994.	7.	7.	조례	제1315호
개정	1996.	1.	16.	조례	제1407호
개정	1996.	7.	18.	조례	제1445호
전면개정	1997.	8.	1.	조례	제1551호
개정	1998.	2.	24.	조례	제1618호
개정	2001.	2.	22.	조례	제1724호
개정	2001.	12.	11.	조례	제1754호
개정	2004.	6.	30.	조례	제1865호
개정	2007.	6.	21.	조례	제2057호
개정	2008.	11.	10.	조례	제2125호(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2010.	6.	28.	조례	제2269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3.	8.	6.	조례	제2483호
일부개정	2014.	1.	10.	조례	제2519호
일부개정	2014.	1.	10.	조례	제2520호(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6.	1.	6.	조례	제2696호(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7.	7.	13.	조례	제2845호
일부개정	2020.	7.	10.	조례	제3215호
일부개정	2022.	6.	27.	조례	제341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예술활동 공간제공 및 공공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시설을 설치하고, 그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6. 30, 2010. 6. 28., 2017. 7. 13.>

제2조(위치) 문화예술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6. 30, 2007. 6. 21., 2010. 6. 28., 2013. 8. 6., 2014. 1. 10., 2014. 1. 10., 2017. 7. 13.>

1. 안양아트센터: 안양시 만안구 문예로 36번길 16(안양동)
2. 평촌아트홀: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76(호계동)
3. 안양파빌리온: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80(안양동)
4. 김중업건축박물관: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03번길 4(석수동)
5. 안양박물관: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103번길 4(석수동)
6. 안양예술인센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138번길 5(안양동)

제3조(기능) 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6. 30, 2007. 6. 21.,

2010. 6. 28., 2013. 8. 6., 2017. 7. 13.>

1.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영화, 연극, 음악, 무용 등의 공연
2. 학술·예술활동의 행사장소 제공
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및 산업전시
4. 향토사료의 수집 및 전시
5.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예술작품 전시 및 교육행사
6. 그 밖에 시설의 설치목적과 관련있는 업무로서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7. 7. 13.]

제4조 삭제 <2016. 1. 6.>

제5조 삭제 <2016. 1. 6.>

제6조(주요사항의 심의) 시설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시설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2.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6. 1. 6.]

제7조 삭제 <2016. 1. 6.>

제8조 삭제 <2016. 1. 6.>

제9조 삭제 <2016. 1. 6.>

제10조 삭제 <2016. 1. 6.>

제11조 삭제 <2016. 1. 6.>

제12조(위탁관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을 안양문화예술재단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수탁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

1. 시설 사용료의 징수, 감면, 반환 등에 관한 사항
2. 시설 이용시간의 게시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3. 8. 6.]

제13조(사용범위) 시설의 사용범위는 문화예술시설 및 그 밖의 부속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01. 12. 11., 2010. 6. 28., 2013. 8. 6., 2017. 7. 13.>

제14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 신청서를 시설 사용일 2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내 거주자와 관외 거주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관내 거주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한다. <개정 2001. 12. 11., 2010. 6. 28., 2013. 8. 6., 2017. 7. 13., 2020. 7. 10.>

② 시장이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한다. 이 경우 사용료 납부방법을 안내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7. 7. 13., 2020. 7. 10.>

③ 제2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일 전날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작품 등 중요사항은 사용일 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7. 7. 13., 2020. 7. 10., 2022. 6. 27.>

제15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6., 2017. 7. 13., 2020. 7. 10.>

1. 문화시설 내의 공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동아리연습실 사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 6. 21., 2010. 6. 28., 2020. 7. 10.>

1. 오전: 09시부터 12시까지
2.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
3. 야간: 18시부터 22시까지

② 각 시설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신설 2020. 7. 10.>

③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서 수령 후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사용일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 2020. 7. 10., 2022. 6. 27.>

④ 사용자가 제1항의 각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개정 2020. 7. 10.>

제17조 삭제 <2001. 12. 11.>

제18조(사용료 감면) 국가 또는 시가 직접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와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제19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7. 7. 13., 2020. 7. 10., 2022. 6. 27.>

1. 신청인이 계약의 해제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였을 때
2. 제20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제20조(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28., 2013. 8. 6., 후단삭제 2017. 7. 13., 개정 2020. 7. 10.>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21조(사용중단신고) 시설 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8., 2013. 8. 6.>

제22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특별시설 설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7. 7. 13.>

② 시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후 즉시 이를 철거 및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8. 6., 2020. 7. 10.>

④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3. 8. 6., 2020. 7. 10.>

제23조(입장권의 관리) ① 입장권은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하되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입장권의 판매 및 관리는 시설의 관리자가 전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28.>

③ 입장권을 예매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판매 및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권리의 양도금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 6. 28.>

제25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관리 사항에 대하여는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6., 2017. 7. 13., 단서삭제 2020. 7. 10.>

제27조(안전점검의 날 운영) 시설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은 대관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그 다음 날로 변경하거나 점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6. 28., 2013. 8. 6., 2020. 7. 10.>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13.>

부칙 <97. 8. 1. 조례 제1551호 전면개정>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이미 허가를 득하였거나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 2. 24. 조례 제1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2. 22. 조례 제1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11. 조례 제1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6. 21. 조례 제20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10. 조례 제2125호,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6. 28. 조례 제22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양문화예술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안양문예회관”을 “안양아트센터”로 한다.

②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다목 중 “문예회관”을 “안양시 문화예술시설”로 한다.

부칙 <2013. 8. 6. 조례 제24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유유부지 복합문화전시공간”을 “안양천년문화관”으로 한다.

부칙 <2014. 1. 10. 조례 제25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알바로시자홀”을 “안양파빌리온”으로 한다.

부칙 <2014. 1. 10. 조례 제2520호,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안양천년문화관”을 “김중업박물관”으로 한다.

부칙 <2016. 1. 6. 조례 제266호,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5조,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주요사항의 심의) 시설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시설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2.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및 ④ 생략

부칙 <2017. 7. 13. 조례 제28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중 “김중업박물관”을 “김중업건축박물관”으로 하고,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제8호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안양박물관 운영 및 관리
9. 안양예술인센터 운영 및 관리

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6. 27. 조례 제3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20. 7. 10.>

문화예술시설 사용료(제16조 관련)

1. 공연장

(단위: 원)

구분	안양아트센터		평촌아트홀	비고
	관악홀	수리홀		
오전	190,000	130,000	180,000	○ 토·일·공휴일은 기준액의 20%를 가산 ○ 행사용 대관은 기준액의 30%를 가산 ○ 공연연습 및 준비를 위한 공연장 사용은 기준액의 50%를 할인 (냉·난방비는 제외)
오후	240,000	145,000	210,000	
야간	285,000	180,000	250,000	

2. 전시실

(단위: 원)

구분	갤러리미담	평촌아트홀 전시실1	평촌아트홀 전시실2	평촌아트홀 전시실3	안양 파빌리온	비고
1일	100,000	120,000	150,000	90,000	160,000	○ 토·일·공휴일은 기준액의 20%를 가산

3. 컨벤션홀

(단위: 원)

구분	사용료	비고
1회	100,000	○ 토·일·공휴일은 기준액의 20%를 가산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

4. 동아리연습실

(단위: 원)

구분	사용료			비고
	연습실1 (75㎡)	연습실2 (144㎡)	연습실3 (72㎡)	
2시간	10,000	20,000	10,000	○ 오전 (09:30~11:30) ○ 오후1 (12:00~14:00) ○ 오후2 (14:30~16:30) ○ 야간1 (17:00~19:00) ○ 야간2 (19:30~21:30)

5. 부대시설

(단위: 원)

구분	사용료	비고
가. 악기		
(1) 스타인웨이피아노	1회 공연 60,000	
(2) 대형피아노	1회 공연 40,000	
(3) 소형피아노	1회 공연 20,000	
나. 음향		
(1) 유선마이크	1회 공연 7,000	- 1개당
(2) 무선마이크	1회 공연 15,000	- 1개당
(3) 녹화시설(CD, DVD)	1회 공연 30,000	
(4) 이동용 앰프세트	1회 공연 25,000	- 추가 마이크 1개당 2,000
다. 조명		
(1) 기본조명(화이트)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관악홀	1시간당 16,000	
- 수리홀, 평촌아트홀	1시간당 11,000	
(2) 기타조명	1회 공연/1대 2,000	
(3) 편조명		
- 관악홀	1회 공연/1대 20,000	
- 수리홀, 평촌아트홀	1회 공연/1대 15,000	
(4) 무빙라이트		
- 관악홀	1회 공연/1대 50,000	
(5) 야외조명	1시간당 16,000	
(6) 포그머신	1회 공연/1대 20,000	- 재료는 사용자 부담
라. 냉·난방		
(1)관악홀	1시간당	별도계산 - 연료(전기) 사용액에 부가세를 가산한 금액 (연료는 시가에 따라 변경)
(2)수리홀, 평촌아트홀	1시간당	
(3)컨벤션홀	1시간당	
(4)전시시설	1시간당	
마. 영사		
(1) 영사기	1회 상영 22,000	
(2) 선전영화	1회 상영 11,000	
(3) 빔프로젝트, 자막기		
- 관악홀	1회 공연 60,000	
- 수리홀, 평촌아트홀	1회 공연 40,000	
- 컨벤션홀	1회 공연 20,000	

구분		사용료	비고
바. 무대시설			
(1) 오케스트라피트	1회 공연	30,000	
(2) 회전무대	1회 공연	30,000	
(3) 승강무대	1회 공연	30,000	
(4) 덧마루	1회 공연	30,000	- 10개 기본(추가 1개당 5,000원)
(5) 보면대	1회 공연	10,000	- 10개 기본(추가 1개당 1,000원)
(6) 이동식계단(음악회용)	1회 공연	50,000	
(7) 댄스플로어			
- 관악홀	1회 공연	80,000	
- 수리홀	1회 공연	40,000	
(8) 음향반사판			
- 관악홀	1회 공연	40,000	
- 수리홀, 평촌아트홀	1회 공연	30,000	
(9) 바텐			
- 관악홀	1회/1개	4,000	
- 수리홀, 평촌아트홀	1회/1개	2,000	
(10) 드라이아이스머신	1회 공연/1대	20,000	- 재료는 사용자 부담
사. 기타			
(1) 비디오 촬영	1회 공연	20,000	
(2) 중계방송			
- 라디오	1회 공연	30,000	
- TV	1회 공연	50,000	
(3) 야외무대		무료	

6. 사용료 가산 적용기준

가. 사용시간 초과 시 공연장, 컨벤션홀 사용료

- 오전시간 초과 시 : 오후 사용료 시간당 금액의 50%를 가산
- 오후시간 초과 시 : 야간 사용료 시간당 금액의 50%를 가산
- 야간시간 초과 시 : 공연 철수 준비 등을 위해 23:00까지 사용할 경우,
야간 사용료 시간당 금액의 100%를 가산

나. 사용시간 초과 시 무대시설 사용료

- 30분 미만 : 해당 사용료의 20%를 가산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 해당 사용료의 50%를 가산
- 1시간 이상 : 해당 사용료의 100%를 가산

[별지 제1호서식]

문화예술시설 사용 신청서

행 사 명 칭				
행사종류와 내용				
사 용 시 설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	. . .부터 오전 . . .까지 오후 야간			
사용시설 및 설비	기본 시설			
	부속 시설			
입 장 예 상 인 원	출 연 자		1 명 당 입장료	
	입장자 수			
사 용 료		기 타		

위와 같이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문화예술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 . . .

신청인 주소 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문화예술시설 사용허가 통지서

행 사 명 칭	
사 용 목 적	
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	. . .부터 오전 . . .까지 오후 야간
사용시설 및 설비	
입 장 자 수	
사 용 료	

사용자 준수사항

1.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그 밖에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3. 문화예술시설 및 설비 각종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합니다.
4. 위 허가사항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 양 시 장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문화예술시설 사용(중단, 변경) 신청서

행 사 명 칭		
행사종류와 내용		
사 용 목 적		
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	. . .부터 오전 . . .까지 오후 야간	
중단 내용 변경	당 초	
	변경사항	

안양시 문화예술시설의 사용신청을 위와 같이 (중단, 변경)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특별시설 설치 허가 신청서

행 사 명 칭		
행 사 종 류 와 내 용		
사 용 목 적		
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		
사 용 시 설 및 설 비	기본시설	
	부속시설	
특별설비 및 시설사항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라 특별시설의 설치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